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 86호

2015. 8. 28(금)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5 - 1037호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남원시 공고 제2015 - 1023호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33

회 람											
--------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2015-1037호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담보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1호)

-법 제80조제1항제1호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나.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8조제3항)

- 남원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 남원시 게시판에 1개월간 공고

3. 의견제출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590-701/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전화 : 063-620-6276 FAX : 063-620-6710)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담당자(전화:063-620-62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납세담보의 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1호)
 - 법 제80조제1항제1호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나.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8조제3항)
 - 남원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 → 남원시 게시판에 1개월간 공고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5. 8. 27. ~ 2015. 9. 15.(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를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남원시세(이하”를 “남원시 시세(이하”로, “부과·징수에 관하여”를 “부과·징수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의 연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의”로, “부과고지”를 “부과·고지”로, “일반우편 방법”을 “일반우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기우편의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유치송달복명서”를 “유치송달 결과보고서”로, “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11조의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을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송달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송달부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첨부하여**”를 각각 “**붙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언어**”를 “**받아**”로 한다.

제13조 중 “**요구한 때**”를 “**요구한 경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로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정하도록**”을 “**고치도록**”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교부금전의 **예탁**)”을 “(교부금전의 **예금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탁**”을 “**예금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를 “**제1항에 따라 예금 위탁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전에 대하여도**”를 “**금전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세 환급금의 **충당 등**)”을 “(시세 환급금의 **충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당하는 때**”를 “**충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부에 의하여**”를 “**교부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내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송이 된**”을 “**돌려 보낼**”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제20조 중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을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 때**”를 “**한 경우**”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도래하지**”를 “**이르지**”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납세자에 대하여**”를 “**납세자에게**”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필증서**”를 “**등록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

증”을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서에 의하여”를 “문서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대하여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압류하고자 하는”을 “압류할”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전이라 할지라”를 “전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력”을 “지급 능력”으로 한다.

제27조 중 “압류하고자 하는”을 “압류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단서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한하여 수색을 개시”를 “한정하여 수색을 시작”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후에”를 “후에는”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의 소재”를 “재산이 있는 곳”으로,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할 때”를 “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하지”를 “따르지”로, “시·읍·면·동의”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지분에 대하여”를 “지분에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원이”를 “모두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및 그”를 “그”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대·임대료”를 “토지 임대료·임대료”로, “급부를”을 “지급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을 “파산 재산관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파산관재인

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를 “파산 재산관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공매하고자 하는”을 “공매하려는”으로,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를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산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35조 제2항 중 “잔여재산”을 “남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압류재산에 대하여는”을 “압류재산은”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중 “접수된 때”를 “접수된 경우”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부를”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시세에 대하여”를 “시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같은 조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잔여”를 “나머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부동산에 대하여”를 “부동산은”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잔여금액”을 “남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원시 게시판에 10일간”을 “시 게시판에 1개월간”으로 한다.

제39조 같은 조 제2호 중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을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반사항”을 “모든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세채권에 대하여도”를 “조세채권이”로 한다.

제42조 제2항제2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43조 중 “결정되면 동”을 “결정되면”으로, “제22조 및 제23조”를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기재하”를 “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취하고”를 “하고”로 한다.

제45조 중 “산정”을 “산출”로, “기산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위원장은 제3항의”를 “위원장은”으로 하고,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세”를 “시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안건에 관하여”를 각각 “안건에”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때에는 관계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를 “작성·관리하여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된 때”를 “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실한 때”를 “상실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체납한 때”를 “체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손상한 때”를 “손상한 경우”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남원시 시세 기본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 관하</u>	<u>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u> 제1조(목적) ----- ----- ----- <u>시행에</u> -----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납원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시세는 다음과 같다.

- 1. ~ 5. (생략)

제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② (생략)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

-----.

제3조(적용) 납원시 시세(이하-----
-----부과·징수는

-----.

제4조(세목) ---다음 각 호와---.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천재지변 등에 따른 기한의 연장)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따라

-----.

② 제1항의-----

-----부과·고지-----

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이·통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통장에게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보통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송달부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일반우편-----.

③ -----등기우편-----.

-----유치송달 결과보고서-----붙여야-----.

④ 영 제11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송달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송달부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9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시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시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이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

한다.

제9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

-----붙여-----
-----.

② -----

-----붙여-----.

제12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

-----받아-----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

-----요구한 경우-----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채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시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생략)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시세 환급금의 통지 등)

① 시세 환급금 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세 환급금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경우-----

--.

③ -----금전
도-----

제18조(시세 환급금의 충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충당하는 경우-----
-----.

제19조(시세 환급금의 통지 등)

① -----

교부의 방법으로-----
-.

② -----
-----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내역-----

--.

③ -----돌려 보
낼-----
날부터-----
-----.

제20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

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 기간

2. (생략)

②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 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

한 경우-----

--.

1.-----

---것은-----

--

2. (현행과 같음)

② -----압류할-----

-----.

-----.

-----.

제26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

전이라-----

-----.

② (현행과 같음)

③ -----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
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
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
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시세 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
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
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
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
여야 한다.

제28조(수색) ①·② (생 략)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
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
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
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
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

-----지급 능력-----

-----.

제27조(시세 확정 전 보전압류) -

압류하려는-----

-----.

제28조(수색)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시작-----
-----.

④ -----경영-----

-----한정하여 수색을 시작-----
-----.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공매) ① (생략)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1. -----

-----파산 재산관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
-----.

2. -----

따라-----공매하려
는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다만, 파산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
여야 한다.

제35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남은 재산
-----.

③ -----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시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처분 유보)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7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금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

 -----압류재산은-----

 -----.

제36조(공매처분 유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접수된 경우-----

 -----.

제37조(배분방법) -----

 -----지급-----

 -----.

1. -----

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
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시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
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
선 징수한다.

3.·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가산금·시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생략)

7. 채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생략)

제38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세에-----

2.-----

-----영
제86조제1항-----

-----.

3.·4. (현행과 같음)

5.-----

-----나머지-----

-----.

6. (현행과 같음)

7.-----부동산은

-----.

8. (현행과 같음)

제38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생략)

②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시보에 게재하거나 남원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9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 중지 기간 중 시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① (현행과 같음)

② -----

남은 금액-----

-----.

③ -----

-----시 게
시판에 1개월간-----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

-----.

1. (현행과 같음)
- 2.-----

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회생계획 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생략)

제43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과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시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시세는 고지서 발송

-----.

- 1. (현행과 같음)
- 2. -----새로-----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
-----결정되면-----

-----제21조
및 제22조-----
-----.

제44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

-----.

- 1. -----

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
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
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생략)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
기 위하여 시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
권 설정 계약이나 가등기 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 계약
을 한 경우에는 서로 알면서 허
위 계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
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
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
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적-----
-----.

2. (현행과 같음)

② -----

-----거
짓-----
-----하고

-----.

제45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
정) -----

-----산출-----

계산한다.

제4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성하며, 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 1. 지방세 업무담당 국·과장
- 2.·3. (생략)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제4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 2. (생략)
- 3. 위원이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장은-----
-----호선(互選)-----
-----.

③ -----

--.

- 1. 시세-----
- 2.·3.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

--.

- 1. -----

-----안건에-----

--
- 2. (현행과 같음)
- 3. -----안건에-----

4. · 5. (생 략)

② · ③ (생 략)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 청구인 · 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48조(심사 ·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생 략)

제4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 청구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
-----증빙자료-----
-----.

③ -----

-----따라-----
-----.

④ -----
-----작성 · 관리하여야-----.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심사 · 의결) ① -----

-----개회하고-----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50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 해제-----.

- 1.-----
-----된 경
우
- 2.-----상실한 경
우
- 3.-----체
납한 경우
- 4.-----손상한 경우

제50조(시행규칙) -----
-----시행에-----
-----.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공고 제2015 - 1023호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중로3-30, 3-29호, 소로3-148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남 원 시 장

2015년 8월 28일

1. 사업의 종류 : 풍산누리안지구내 남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사업량	사업시행자	비고
도시계획도로 (중로3-30, 3-29호, 소로3-148호 선) 개설사업	남원시 월락동 5-2번 지외 14필지	중로	3	30	월락동 13-2도 ~ 152-2도	L=136m B=12m	(주)풍산건설 대표. 안*용	
		중로	3	29	월락동 131-6도 ~ 157-9도	L=26m B=12m		
		소로	3	148	월락동 29-3도 ~ 180대	L=14m B=6m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16. 2. 28
4.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6.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사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자	권리의 종류	
1	월락동	5	42	임	121	31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	주식회사 **건설	-		
2	"	29	3	도	876	37	국 (건설부)		-		
3	"	131	1	전	496	2	광양시 중동 1418 무등파크 ***동 ****호	김*봉	-		
4	"	131	47	도	30	30	월락동 ***	임*권	-		
5	"	148		도	23	11	월락동 *	김*규	-		
6	"	149	1	도	53	53	향교동 ***-*	윤*순 외6인	-		
7	"	149	3	대	145	4	이백면 척동길 ***-*	임*래 외4인	-		
8	"	149	5	도	33	2	국(건설부)		-		
9	"	150	2	주	620	14	월락동 ***-*	김*애 외1인	-		
10	"	151	2	도	17	17	월락동 ***	박*옥	-		
11	"	152	4	도	3	3	월락동 **	이*재	-		
12	"	152	5	대	2	2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	주식회사 **건설	-		
13	"	157	3	대	146	3	남원시 낙현길 **	최은정 외1인	-		
14	"	157	19	대	657	12	남원시 낙현길 **	최*정 외1인			
15	"	157	20	도	3	1	월락동 *-*	김*곤 외6인			
16	"	157	37	답	160	4	남원시 낙현길 **	최*정 외1인			
17	"	622	51	구	6,950	46	국(농림축산식품부)				
18	"	622	85	구	611	22	국(농림축산식품부)				
19	"	625		도	1,338	187	국(건설부)				
20	"	626		도	2,051	133	국(건설부)				
합 계		20필지			14,335	614					

순 위	지 번	형 태	지장물 포함규모 (도로선 내)		소 유 자		비 고
			규 모	면적(m ²)	주 소	성 명	
1	157-3 대	화 단 (**어린이 집)	2.9m×15m, 높이 1.2m	40.0	남원시 낙현길 **	최*정 외1인	
2	151-1 대	주택 (슬라브)	2.0~2.3m × 9.2m	1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	황*령	미등기
3	150-2 주	함석지붕 (기둥 및 지붕)	1.6~2.0m × 8.6m	15.0	월락동 ***-*	김*애 외1인	
4	152-3 대	차 고 지	1.3~1.8m × 5.8m	7.0	월락동 ***-*	이*대	미등기
합계		4건					